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권향엽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9583호)

2026. 9.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상지원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성적불쾌감으로 변경	2

I. 개요

1. 권향엽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9583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권향엽의원 등 17인

(2) 제 안 일 : 2026. 6. 29.

(3) 회 부 일 : 2026. 7. 23.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다수의 법률은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부끄럽고 창피한 마음을 느껴야만 성희롱·성폭력의 피해자라는 그릇된 인식을 줄 수 있고, 피해자가 느낄 수 있는 분노·공포·모욕감 등의 다양한 감정을 배제하게 되어 적절하지 않음.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22년 성범죄 양형기준에서 사용하던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한 바 있음.

이에 현행 법률에서 사용되고 있는 ‘성적 수치심’이라는 표현을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1항제6호나목).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

가. 개정안의 내용

- 현행법은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 등이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를 한 경우를 장기요양기관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 중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1항제6호나목).

현행	개정안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의2, 제3호의5, 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① ----- ----- ----- ----- -----.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6.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 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다만,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	6. ----- ----- -----. ----- -----

현행	개정안
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 -----.
가. (생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나. ----- <u>성적 불쾌감</u> ----- -----
다. ~ 마. (생략)	다. ~ 마. (현행과 같음)
7.·8. (생략)	7.·8. (현행과 같음)
② ~ ⑨ (생략)	② ~ ⑨ (현행과 같음)

※ 시행일: 공포한 날

나. 검토의견

□ 현행법¹⁾은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 등이 ① 수급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신체적 학대), ②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성적 학대), ③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수급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유기·방임), ④ 수급자를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경제적 학대), ⑤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수급자의 정신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①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의2, 제3호의5, 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6.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 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다만,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가. 수급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나.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다.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수급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라. 수급자를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마.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수급자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정서적 학대)를 한 경우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6개월의 범위에 업무정지를 명하거나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에 장기요양기관에서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 등이 발생하면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복지 생활시설 학대 판정지표에 따라 학대 사례판정을 하고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사례판정 결과를 참고하여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함.

- 이에 다음과 같이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은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대해서 매년 700건 이상(중복 포함)의 노인학대 사례판정이 이루어지고, 17~21건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행정처분이 이루어지고 있음2).

2) 참고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처분 외에 매년 54~79건의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행정처분이 이루어지기도 함.

2)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4.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3. 7. 13.>

행정처분의 기준(제26조의2관련)

위 반 행 위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상
4.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 라. 시설 거주자에 대한 부당한 체벌, 폭행, 학대 등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법 제40조제1항 제4호	개선명령	시 설 장 교 체	시설폐쇄

<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학대 사례 판정 현황 >

(단위 : 건)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계	700	869	806
신체적 학대	186	286	278
정서적 학대	33	100	35
성적 학대	157	162	222
경제적 학대	37	36	20
방임	286	284	251
유기	1	1	-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이어야함³⁾.

※ 노인학대는 2가지 이상의 학대유형이 동반되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노인학대 통계 수치와 노인학대 유형별 통계 수치는 차이가 있음.

자료 : 보건복지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학대판정 행정처분 내역 >

(단위 : 개소)

구분	계	업무정지*	지정취소
계	58	51	7
2023	17	13	4
2024	20	19	1
2025	21	19	2

* 업무정지 같음 과징금 포함

※ 장기요양기관에서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 등이 발생하면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복지 생활시설 학대 판정지표에 따라 학대 사례판정을 하고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사례판정 결과를 참고하여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하는데, 학대판정과 행정처분 간의 시차 존재로 인해 판정과 처분 시점이 불일치하고, 행정소송·행정심판 등 진행 중 및 패소로 인한 처분 취소 건은 제외하였으며, 행정처분 작성일 이후 행정소송·행정심판 등 절차를 통해 처분 결과가 변경될 수 있음.

※ 출처: 각 시도 제출자료(경기는 취합 중으로 '25.8월 취합된 자료로 작성)

자료 : 보건복지부

-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 ①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가급여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4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대상) 법 제3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을 말한다.

□ 업무정지·지정취소 사유 중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 등이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를 한 경우와 관련하여, 일상적인 의미에서 수치심이란 다른 사람들을 볼 낮이 없거나 스스로 떳떳하지 못한 마음⁴⁾에 해당하므로, 부끄럽고 창피한 마음을 느껴야만 피해자라는 그릇된 인식을 줄 수 있고, 피해자가 느낄 수 있는 분노·공포·모욕감 등의 다양한 감정을 배제하게 되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 특히,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22년 제117차 회의에서 강간 등 범죄에 적용되는 성범죄 양형기준 중 가중적 특별양형인자에 포함된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가 정조 관념에 기초한 것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떳떳하지 못한 느낌을 받아야 한다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한 바 있음.⁵⁾

□ 이에 개정안은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하여 정비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긍정적인 것으로 보임.

- 특히, 앞서 살펴보았듯이 행정처분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노인 학대 사례판정을 거쳐 이루어지는데,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사례

4)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수치심 - 수치를 느끼는 마음.

수치 - 다른 사람들을 볼 낮이 없거나 스스로 떳떳하지 못함. 또는 그런 일.

5) 대법원 양형위원회 보도자료, 양형위원회 제117차 회의 보도자료, 2022.7.5.

4. 양형인자

■ 특별가중인자

○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모두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

- 성범죄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형법 또는 형사특별법상 성범죄의 경우 ‘성적 수치심’이 구성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는 과거의 정조관념에 바탕을 두고 있고, 마치 성범죄의 피해자가 부끄럽고 창피한 마음을 가져야만 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어 적절하지 않음

-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함으로써 성범죄의 피해자가 실제로 갖게 되는 피해 감정을 고려하도록 함

판정 시에 성적 학대 판정지표(지표2)에 따라 종사자의 행위가 수급자에게 “성적 불쾌감”을 주는 행위인지를 판정하고 있음.

<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성적 학대 판정지표 >

지표 2 : 노인에게 성적 불쾌감을 주는 표현을 하거나 행위를 한다.

세부지표	대표적 행위
성적 수치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언행을 한다.	☒ 음란하고 상스러운 성적 농담을 던진다. ☒ 신체를 빗대어 불쾌감을 한다.(예: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 ☒ 성적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소문을 유포한다. ☒ 목욕, 기저귀교체 등에 대해 동성자의 케어를 원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조치하지 않는다. ☒ 다른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노인의 신체 및 성적 신체부위를 드러내어 성적 불쾌감을 느끼게 한다.(CCTV에 성적 신체부위가 녹화되고 있는 영상을 모니터링한다)
노인에게 음란물이나 타인의 음란행위를 보게 한다.	☒ 거실 등의 공용 공간 등에서 음란영상을 보게 한다. ☒ 음란한 사진, 낙서, 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준다. ☒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 부위를 보여주거나 만지는 행위를 보게 한다. ☒ 자위행위를 보게 한다.
노인의 성적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다.	☒ 기저귀 찬 모습을 촬영한다. ☒ 알몸이나 성적 부위를 촬영한다. ☒ 촬영된 성적 신체 부위 사진이나 영상을 공개한다.
노인을 벗겨놓은 상태로 둔다.	☒ 옷을 입히지 않고 그대로 둔다. ☒ 알몸 또는 성적부위를 가리지 않은 상태로 둔다.
다른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노인의 신체 및 성적 신체부위를 드러내어 성적 불쾌감을 느끼게 한다.	☒ 성적 신체 부위를 드러내고 기저귀를 교체한다(예: 가림막 미설치 및 가림막 미사용) ☒ 알몸 또는 신체 일부를 벗겨놓고 목욕대기를 하게 한다 ☒ 신체와 성적 신체 부위를 가리지 않고 목욕을 시킨다 ☒ 성적 신체 부위를 드러내고 옷을 갈아입힌다

자료 : 보건복지부

□ 다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노인복지법」 등의 다른 법률에서도 ‘성적 수치심’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주는 등의 행위를 금지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특히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성적) 수치

심'이라는 표현을 모두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하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6909호, 고민정의원 대표발의, 2024.12.24.)」이 발의되었는데,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다른 법률의 '성적 수치심'과 구별되는 의미인지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성적) 수치심'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법률 현황 >

2025년 8월 현재

연번	법률명	대상 조문	비고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가 <u>조사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u>	업무처리 준수사항
2	노인복지법	제39조의9(금지행위)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사람(이하 이 조에서 “노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	형사처벌 대상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①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의 2, 제3호의5, 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6.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 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다만,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나. <u>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u>	행정제재 대상

연번	법률명	대상 조문	비고
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대부계약의 효력)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대부계약은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대부업자, 불법사금융업자또는 여신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대부제공자”라 한다)은 제8조, 제11조 및 제15조에도 불구하고 거래 상대방에게 그 원본의 반환 및 이자의 변제를 청구하지 못하며, 거래상대방이 대부제공자에게 이미 지급한 원본과 이자가 있으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1. 대부계약 과정에서 대부제공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거래상대방에게 하거나 거래상대방이 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영상물·음성물 또는 그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및 복제물을 요구·수집·제공·유통하는 행위	행정제재 대상
5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공자 등록의 취소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6. 소속 종사자가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u>이용자에 대하여 폭행, 상해,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또는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u>	행정제재 대상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u>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u> 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의3(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① <u>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제14조의2 제2항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u> 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사처벌 대상

연번	법률명	대상 조문	비고
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u>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u> 제15조의2(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u>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u>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u>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u> 참여시키는 행위	형사처벌 대상
8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장애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행위	형사처벌 대상
9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괴롭힘 등의 금지) ⑤ 누구든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수치심을 자극하는 언어표현, 희롱, 장애 상태를 이용한 추행 및 강간 등을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형사처벌 대상
10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활동지원기관 지정의 취소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활동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를 정지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6. 활동지원인력이나 그 밖의 활동지원기관 종사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나. <u>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u>	행정제재 대상
11	철도안전법	제47조(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① 여객(무임승차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여객열차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u>철도종사자와 여객 등에게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u>	형사처벌 대상
12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 의무)① 항공기 내에 있는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u>다른 사람에게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u>	형사처벌 대상

□ 관련하여, 동 개정안 외에 동 의원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 등⁶⁾을 함께 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므로 그 심사 경과를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6) [221957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의원 등 17인)
[2219581]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의원 등 17인)
[2219575]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의원 등 17인)
[2219580]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의원 등 17인)
[221957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의원 등 17인)
[2219588]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의원 등 17인)
[221958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의원 등 17인)
[2219589]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의원 등 17인)
[2219576]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의원 등 17인)

다. 관계부처 및 관련기관 의견

□ 보건복지부

- 동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공감함. 특히,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가 과거의 정조 관념에 바탕을 두고 있고, 마치 성범죄 피해자가 부끄럽고 창피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어 적절하지 않아 ‘성적 불쾌감’으로 수정했다는 양형위원회의 변경 이유에 전적으로 동의함.

□ 국민건강보험공단

- ‘성적 수치심’이라는 표현이 피해자의 다양한 정신적 피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를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하려는 취지에 공감함. 피해자는 수치심뿐만 아니라 공포, 모욕감, 혐오감, 불안 등 다양한 정신적 고통을 경험할 수 있으므로, 보다 포괄적인 표현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성범죄 양형기준을 ‘성적 수치심’에서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22년)한 점을 고려하면, 취약계층 보호 관련 법률 전반의 용어를 일관되게 정비하려는 입법 취지에도 부합함.

문 의 처

02)6788-5503